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8. 12. 18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08. 11. 27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3조제1항의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“매월 2,200,000원”을 “매월 1,858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매월 2,200,000원”을 “매월 1,858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월정수당지급)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<u>매월 2,200,000원을</u> 지급한다	제3조(월정수당지급)①----- ----- ----- <u>매월 1,858,000원</u>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참고자료]

지 방 자 치 법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8>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: 별표 7에 따른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